

## 용인시 과·소업무 지도담당 규정

제정 2005. 10. 5 훈령 제206호  
개정 2006. 10. 13 훈령 제241호  
2006. 12. 29 훈령 제247호  
2007. 7. 1 훈령 제260호  
2008. 12. 29 훈령 제276호  
2009. 6. 26 훈령 제285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시 본청의 국장으로 하여금 과·소의 행정을 종합지도·지원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발전과 책임행정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담당) ① 국장의 지도담당 및 협조담당은 별표와 같다.

② 과·소에 대하여 공통적인 지도사항과 특별히 지시받은 사항에 대하여 지도책임을 진다.

제3조(지도감독) 국장은 과·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1. 전 직원의 근무상황, 지휘감독
2. 각종 업무의 추진상황 지도 및 지원
3. 일제지도를 요하는 사항과 시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

제4조(결재 또는 보고) 각 과·소장 및 전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장에게 결재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한다.

1. 과·소장 전결사항외의 중요한 사항
2. 과·소장 전결사항 중 중요한 사항
3. 기타 과·소 운영과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시행에 필요한 사항)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부칙

이 규정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6. 10. 13 훈령 제241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용인시 과·소업무 지도담당 규정

부칙 <2006. 12. 29 훈령 제247호>  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7. 7. 1 훈령 제260호>  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12. 29 훈령 제276호>  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9. 6. 26 훈령 제285호>  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<개정 2006. 10. 13, 2006. 12. 29, 2007. 7. 1, 2008. 12. 29, 2009. 6. 26>

## 용인시 과·소업무 지도담당 및 협조담당

### 1. 지도담당

| 담당국장     | 지 도 담 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         | 담당관·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직속기관·사업소 |
| 자치행정국장   | 행정과, 정책기획과, 재정법무과, 회계과, 세정과, 정보통신과 |          |
| 주민생활지원국장 | 주민생활과, 복지위생과, 가족여성과, 문화관광과, 교육체육과  |          |
| 산업정책국장   | 기업지원과, 농축산과, 산림휴양과, 자원관리과          |          |
| 도시주택국장   | 도시계획과, 도시개발과, 주택과, 건축과, 도시공원과      |          |
| 건설교통국장   | 교통과, 도로과, 하천과, 환경과, 재난안전과          | 차량등록사업소  |

※ 공보관, 대외협력관 및 감사담당관은 부시장 직속임.

### 2. 협조담당

| 구 분      | 사 업 소 명                  | 비 고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주민생활지원국장 | 치인구·기흥구·수지구 보건소, 정보문화기획단 |     |
| 산업정책국장   | 농업기술센터                   |     |
| 건설교통국장   | 상수도사업소, 하수도사업소, 건설사업단    |     |